

#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 1998년 11월 24일
- 나. 제출자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 다. 회부일자 : 1998년 12월 3일
- 라. 상정일자 : 제82회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1998년 12월 22일)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 가. 개정 사유

-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
- 행정의 영역과 수요 팽창에 따른 행정기구의 비대화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위탁 촉진

### 나. 주요 골자

- 민간위탁사무의 기준(제4조)
  -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제5조)
  -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민간위탁신사위원회 설치 (제7조)
  -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등 6~9명으로 구성

-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9조)
  -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민간수탁기관에 있으며, 권한 행사는 민간수탁기관의 명의로 표시
- 협약체결등 (제10조)
  -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액, 의무이행 등 필요사항은 협약을 체결하며 반드시 공증을 해야함
- 이의신청 (제13조)
  -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처리상황의 감사 (제14조)
  -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 실시

### 3.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제95조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재천)

- 사무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 행정구조 조정에 따른 기구의 축소개편에 맞는 작은정부 구현으로 행정의 비효율적이고, 맞지않은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간여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행정능율의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 자치단체 내부의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지방행정 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업무가 자치단체와 민간간의 상호 경쟁과 조화, 비교할 수 있어 좋을 것으로 봄.
-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제5조)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의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마련하였고
- 민간수탁기관의 선정(제6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제5조의 선정기준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능력있는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음
-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제7조)의 위원구성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고, 사업계획서의 심사를 위해서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해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토록하여 능력있는 수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있음.
-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 맞지않고, 일부업무의 민간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로 시기에 맞고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사무 간소화와 행정간여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위탁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라 생각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기타사항 : 없음

#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1998년 12월 22일

제안자 : 김선옥 의원 외 5인

## ■ 수정이유

-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조정하기 위함

## ■ 주요골자

- 제7조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제3항을 삽입하고 “제3항 내지 제5항”을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변경한다.
- 제3항 삽입내용은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2인, 구의회 의원 2인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소한다.”

##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7조③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③항,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2인, 구의회 의원 2인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안 제7조 중 “제③항”을 “제④항”으로 한다.

안 제7조 중 “제④항”을 “제⑤항”으로 한다.

안 제7조 중 “제⑤항”을 “제⑥항”으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p>제7조(민간위탁심사위원회)</p> <p>① ~ ② (생략)</p> <p>(신 설)</p> <p>③ (생 략)</p> <p>④ (생 략)</p> <p>⑤ (생 략)</p>	<p>제7조(민간위탁심사위원회)</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2인, 구의회 의원 2인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현행 제③항과 같음)</p> <p>⑤ (현행 제④항과 같음)</p> <p>⑥ (현행 제⑤항과 같음)</p>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구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중 일부를 구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등) ①구청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구청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한 때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국가 또는 광주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수탁기관의 선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민간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제5조의 선정기준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민간위탁심사위원회)** ①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구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관계공무원과 당해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당해 안건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민간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민간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등)** ①구청장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하여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 위반에 따른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지휘·감독)** ①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민간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12조(사무편람)** ①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3조(이의신청)** ①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민간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민간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민간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민간수탁기관 및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청구로 본다.

**제 14조(처리상황의 감사)** ①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